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3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서일준·고동진·권영세

이헌승 • 박성민 • 이상휘

백종헌 • 조경태 • 윤상현

조승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형법」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"아동학대살해죄"가 아닌 「형법」 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,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 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

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4조(아동학대살해ㆍ치사) ① ㆍ  | 제4조(아동학대살해ㆍ치사) ① ㆍ |  |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  |  |
| <u> &lt;신 설&gt;</u> |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 |  |  |